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현장 입회요구서

발급번호 : 2018-0001

수신자 :

제 목 :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현장 입회요구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및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에 따라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대상자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료를 수거할 계획이오니, 현장에 입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소유자 등 성명 :
 2. 조사일시 :
 3. 조사장소 :
 4. 조사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
 5. 조사범위와 내용 :
 6. 통보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현장제시, []기타
 7.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이나 자재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산물안전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8. 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시료를 임의로 수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조사당일 현장 입회가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 담당자 :)
- * 통보방법이 제6호의 전화인 경우 통화내역을 다음에 따라 기재
(일시 : , 송화자 : , 수화자 : , 기타사항 :)

0000. 00. 00.

기 관 장

직 인